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7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7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”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설치된 「도정혁신기획단」을 「혁신분권담당관」으로 전환하고,
-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「총무과」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 조정
 - “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”을
 - “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”으로 조정
-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 조정
 - “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” 신설
 - “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” 신설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”에 따라,

우리 도에서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 설치하고,

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에 “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”과 “공무원 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여, 현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,

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안 제6조제10호 “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서 정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와,

※ 제6조제4항 “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”

총무과는 제163회 임시회(1999.8.24)에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실·국에 두지 않고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었으며,

제222회 임시회(2004.2.3)에서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으나,

우리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또는 행정(관리)국 소관으로 두고 있어,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점과 새로운 여건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
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는 실·국·본부와 과·담당관으로 정한 규정과 동 규정 제7조제1항에서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, 동 규정 제9조 과·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,

행정기구는 실·국·본부와 과·담당관을 의미하고, 동규정 제19조제6항 “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한 것을 볼 때 ,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“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하지 않고 “조례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,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동 규정 제6조제4항에 정한바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※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

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-----”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

“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

동 규정 제7조제1항

“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----- ”

동 규정 제9조

“시·도 본청에 두는 과·담당관의 설치 및 그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”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